

## 【 10 】 양주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0. 3. 28.

제출자 : 양주군수

### □ 폐지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중복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자치법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양주군조례 제 호

##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6. “再活用製品”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製品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7. “再活用施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는데 사용되는 裝置·裝備·設備등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裝置등을 말한다.
8. “再活用産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거나 再活用技術등을 研究·開發하는 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9. “廢棄物”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말한다.

第3條 ( 다른 法律과의 관계 )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과 廢棄物의 發生抑制(이하 “資源再活用”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廢棄物管理法을 적용한다.

第4條 (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 ① 國家는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特성을 고려하여 國家의 施策에 따라 당해 地域안의 資源再活用을 촉진할 責務를 진다.

第5條 ( 事業者의 責務 ) ① 事業者는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協力하여야 한다.

② 建設工事を 發注하는 事業者は 資源을 節約하고 再活用製品의 사용을 擴大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建設工事에서 발생되는 副產物을 再活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法5863>

第6條 ( 國民의 責務 ) 國民은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排出, 再活用製品의 優先購買, 1回用品의 使用自製등으로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が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協力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3>

第7條 ( 資源再活用基本計劃의 수립 ) ① 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資源再活用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年次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管轄區域의 特성을 고려한 地域안의 資源再活用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

## 第39編 環 境 第3章 廉棄物管理 資源의 節約과 再活用促進에 관한法律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副産物의 用途別 規格에 따른 再活用方法
2. 指定副産物의 利用促進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실시
3. 指定副産物의 分離·破碎등에 관한 사항

第13條 (資源再活用 권고 및 措置命令) ①主務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및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が 각 해당指針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事業者에 대하여 指針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名單과 指針違反內容을 公開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第14條 (必要措置의 要청등) ①環境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에서 規定한 指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主務部長官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產業資源部長官은 第9條第2項第4號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63>

第15條 (包裝廢棄物等의 發生抑制를 위한 措置命令등) ①製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이하 “製造者등”이라 한다)는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製品의 包裝方法 및 包裝材의 材質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主務部長官은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製造者등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부터 製品의 포장방법 및 包裝材의 材質에 관한 檢查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3〉

③環境部長官은 主務部長官에 대하여 製造者등으로 하여금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製造者등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包裝材의 材質을 포장의 表面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3〉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飲食店·沐浴場·百貨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경영하는 事業者는 1回用品 使用自制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3〉

⑤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3〉

⑥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내용·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의2 (불박이장의 設置 권장) 環境部長官은 廢家具類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共同住宅을 建設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불박이장등 收納空間을 設置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法5863〕

第16條 (廢棄物排出者の 再活用의 이행등) ①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을 排出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 建物에서 排出되는 廢棄物중 再活用할 수 있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再活用하거나 종류·性狀別로 分離保管하여 再活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排出者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排出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第17條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 ①環境部長官은 再活用可能資源의 效率적인 活用을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全國的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市·道知事은 再活用可能資源의 效率적인 活用을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의 特성을 고려하여 地域別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改

## 第39編 環 境 第3章 廢棄物管理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 관한法律

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0條 (預置金 및 負擔金의 用途)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預置金 및 負擔金은 다음 각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1. 再活用可能資源의 購入 및 儲蓄
2. 預置金의 還給
3.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한 사업 및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와 그에 대한 지원
4. 廢棄物의 效率적 再活用과 減量化를 위한 研究 및 技術開發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廢棄物回收 및 再活用費用의 지원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本條新設 94.1.5]

### 第3章 (第21條 내지 第24條) 刪除 <94.1.5>

## 第4章 再活用產業의 육성

第25條 (對象事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產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號의 사업을 하는 者(이하 “再活用事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5.8.4, 99.2.8 法5863>

1.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의 設置事業
2.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指定副產物排出事業者の 資源再活用事業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團地 造成事業 또는 集荷·保管場所設置事業
4.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中間處理業者 및 同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再活用申告者의 再活用事業
5. 資源再活用을 위한 研究 및 技術開發事業
6. 第1號 내지 第5號의 再活用產業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大統領 승인 정하는 사업

(추 108)

## 第39編 環境 第3章 廉棄物管理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 관한法律

②環境部長官과 再活用製品을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은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으며, 民間團體 또는 企業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을 권유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31條 (再活用製品의 規格·品質基準) 產業資源部長官은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再活用製品의 品目別 規格·品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法5863>

第32條 (再活用團地의 造成等)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再活用事業者の 事業敷地 제공등을 위하여 再活用團地를 造成할 수 있다.

②再活用團地의 造成·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供給하는 工場用地에 우선 入住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④市長·郡守·區廳長은 놓쓰개 된 냇장고등 大型廢棄物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63>

⑤市·道知事は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 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63>

⑥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廣域的으로 集荷·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이상의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하기 위한 施設을 薩獨 또는 共同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 <新設 99.2.8 法5863>

## 第5章 補則

第33條 (資源再活用協議會) ①再活用製品의 生產者·使用者, 再活用可能資源의 收  
(추 108)

## 第39編 環境 第3章 廉棄物管理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集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資源再活用促進을 위한 協議會(이하 “資源再活用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63>

②主務部長官은 資源再活用協議會의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을 豊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34條 (보고 및 檢查등) ①環境部長官,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事業所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8·4, 97·12·13 法5454, 99·2·8 法5863>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種指定事業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2種指定事業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副產物排出事業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者등
6.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7. 廉棄物排出者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9.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1號 내지 第4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5條 (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資源再活用을 위한 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1994. 8. 25]  
조례 제1510호]

개정 1997. 12. 31 조례 제1661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를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를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책무)** ①군수는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 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 3 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1회용품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①군수는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이상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법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5 조(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등)**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보

(추 2)

제9편 환경보호 양주군자원의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 6 조(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 ①군수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 운반, 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 7 조(재활용 추진협의회) ①군수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양주군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군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군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등 실비를 군 협의회 구성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보고 및 검사등) ①군수는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9 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4. 8.25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3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추 2)

##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폐지

### □ 폐지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중복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 폐지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33조, 제34조

###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현행조례(전문)